의 안 번 호

1342

【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5. 2.(화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5. 8.(월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5. 15.(월)

# 2. 제안이유

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「지방세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고, 지방세관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구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함.

# 3. 주요내용

가. 지방세관계법과 중복된 조문 정비

조문 간소화 : 25개 조문 ⇒ 14개 조문

나.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: 과세표준, 세율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: 납기(안 제5조)

라. 주민세(재산분, 종업원분): 세율, 신고의무(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)

마. 재산세 : 중과대상지역, 도시지역분 세율 등 (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)

4. 근거법규:「지방세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

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「지방세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간 결하게 규정하고,
- O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,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개정 전 조례

#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

[시행 2014.12.22.] [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702호, 2014.12.22., 일부개정]

울산광역시 중구 290-3380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세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「지방세법」, 「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 조례」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3.5.6>

제3조(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) 구세의 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」 제5조에 따른다.<개정 2013.5.6, 2014.12.22>

##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

**제4조(과세표준)** 「지방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(이하 이 절에서 "등록면허세"라 한다)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 한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**제5조(세율)**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 한다. <개정 2013.5.6><전문개정 2014.12.22>

제6조(신고 및 납부)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기·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·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조의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5.6><개정 2014.12.22>

- 1. 등기 · 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
- 2. 등기 · 등록의 원인
- 3. 과세대상의 소재지
- 4. 토지: 지번·지목·면적 및 용도
- 5. 건축물 : 종류·구조·바닥면적·연면적 및 용도
- 6. 자동차 · 건설기계 : 종류 · 연식 · 용도
- 7. 선박 : 선질 · 명칭 · 정계장 · 구조 · 용도 · 총톤수 또는 적재량
- 8. 광업권 : 광물의 종류 · 광구의 면적 · 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
- 9. 어업권: 어업의 종류와 명칭·어장의 면적·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
- 10. 과세대상의 가액
- 11. 그 밖의 참고사항

###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

제7조(세율)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(이하 이 절에서 "등록면허세"라 한다)의 세율은 법 제3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한다.<전문개정 2014.12.22>

**제8조(납기)**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 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.

**제9조(비과세 신청)**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 과세할 수 있다.

- 1.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
- 2. 면허물건의 소재지
- 3. 면허의 종류 및 종별
- 4.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#### 제3장 재산세

**제10조(세율)**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토지

가. 종합합산과세대상

과세표준	세 율
5,000만원 이하	1,000분의 2
5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	30만원 + 5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
1억원 초과	25만원 + 1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

#### 나. 별도합산과세대상

과세표준	세 율
2억원 이하	1,000분의 2
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0만원 + 2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
10억원 초과	280만원 + 10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4

#### 다. 분리과세대상

- 1) 전 · 답 · 과수원 · 목장용지 및 임야 : 과세표준의 1천분의 0.7
- 2)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: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
- 3) 그 밖의 토지 : 과세표준의 1천분의 2

#### 2. 건축물

가.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(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

지 아니한다),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: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<개정 2013.5.6>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「지방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: 과세표준의 1천분의 5

다. 그 밖의 건축물 : 과세표준의 1천분의 2.5

#### 3. 주택

가.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: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

나. 그 밖의 주택

과세표준	세 율
6천만원 이하	1,000분의 1
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6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1.5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195,000원 +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2.5
3억원 초과	570,000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4

#### 4. 선박

가.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: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

나. 그 밖의 선박 : 과세표준의 1천분의 3

5. 항공기 : 과세표준의 1천분의 3

**제11조(중과대상지역)**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"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.

## **제12조(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)** <개정 2013.5.6>

-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
- 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12.22>
-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.

**제13조(도시지역분 세율)**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.4로 한다.<개정 2013.5.6>

**제14조(납기)**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13.5.6>

제15조(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)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, 소재지, 지번, 구조, 용도, 층수,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

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울산광역시 시세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신 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5.6>

- 1.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
- 2.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, 증축, 개축한 때
- 3.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
- 4. 토지·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
- 5. 토지·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
- 6.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·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·면적을 증감한 때
- 7. 토지·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, 주소가 변경된 때
-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 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, 종류,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울 산광역시 시세 조례 1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 정 2013.5.6>
- 제16조(선박에 관한 신고의무)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, 명칭, 건조연월일, 기관번호, 정계장, 용도, 톤수, 취득 가격, 과세사실 발생연월일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 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울산광역 시 시세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5.6>
  - 1. 선박을 취득한 때
  - 2.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
  - 3.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
  - 4.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
  - 5.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
- **제17조(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)**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, 명칭, 제조연월일, 형식, 용도, 이륙중량, 적재능력, 취득가격,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울산광 역시 시세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5.6>
  - 1. 항공기를 취득한 때
  - 2.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
  - 3.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
  - 4.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

- 5.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
- **제18조(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)** 납세의무자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 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,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9조(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)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 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.
  - 1.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, 거소, 영업소 또는 사무소
  - 2. 토지의 소재, 지번, 지목, 면적 및 용도
  - 3. 건축물의 소재, 종류, 구조, 바닥면적, 연면적 및 용도
  - 4. 주택의 소재, 지번, 종류, 구조, 면적 및 용도
  - 5.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
  - 6. 선박의 선질, 명칭, 정계장, 구조, 용도, 총톤수 또는 적재량
  - 7. 항공기의 종류, 이륙중량, 적재능력, 항공기의 형식, 용도
- 제20조(공용·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)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 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**제21조(납세관리인 지정)** 구청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### 제4장 주민세 재산분

- **제22조(세율)**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 면 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.
  -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.
- **제23조(신고의무)**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 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, 지번, 구조, 용도, 층수, 건축

물의 연면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울산광역시 시세 조례」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5.6>
- 1.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
- 2.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
- 3.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,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
- 4.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
- 5.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

### 제5장 주민세 종업원분<개정 2014.12.22>

**제24조(세율)** 법 84조의3제2항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.<전문개정 2014.12.22>

제25조(신고의무) ①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, 급여총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12.22>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1.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
- 2.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
- 3.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
- 4.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

부칙 〈제702호. 2014.12.22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(2011. 4. 25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5. 6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12.22)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.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